

대구지방법원 2017. 2. 8 선고 2016가단6719 판결 [건물철거및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1. A

피 고 2. B

변론 종결 2017. 1. 18

판결 선고 2017. 2. 8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들에게,

가. 경북 경산시 D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10, 9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선내 '기'부분
조적조 스텔트층 단층주택 39㎡, 같은 도면 표시 3, 4, 5, 6, 10,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
노/부분 블록조 스텔트 지붕 단층부엌 20㎡, 같은 도면 표시 6, 7, 8, 9, 10, 6의 각 점을 순차로
연결한 선내 노'부분 블록조스텔트지붕단층보일러실 3㎡를 철거하고,

나. 경북 경산시 D 대 102㎡를 인도하고,

다. 2015. 7. 20.부터 위 나항 기재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각 연 700,150원의 비율에의한금원을
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,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○ 원고들은 2015. 7. 16. 경북 경산시 D 대 102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 중각 1/2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.

○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경북 경산시 E 지상 건물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한다)의 소유자인데, 이 사건 건물 중 "①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10, 9, 1의 각 점을순차로 연결한 선내 '기'부분 조적조 스테트즙 단층주택 39㎡, ② 같은 도면 표시 3, 4,5, 6, 10,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신부분 블록조 스테트 지붕 단층부엌 20㎡, ③ 같은 도면 표시 6, 7, 8, 9, 10,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부분 블록조 스테트지붕 단층보일러실 3㎡"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.

○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5. 7. 20.부터의 임료는 연 1,400,300원이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갑 제1호증의 1, 2, 갑 제2호증,갑 제4호증,감정인 F, G의 각 감정촉탁결과,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 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"①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10, 9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시부분 조적조 스테트즙 단층주택 39㎡, ②같은 도면 표시 3, 4, 5, 6, 10,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블록조 스테트 지붕 단층부엌 20㎡, ③ 같은 도면 표시 6, 7, 8, 9, 10,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선내 '드'부분 블록조 스테트지붕 단층보일러실 3㎡"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침범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철거하고,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또한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, 원고들은 그로 인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.

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,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5. 7. 20. 이후의 차임이 월 1,400,3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중 1/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15. 7. 16.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5. 7. 20. 부터 이 사건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차임 중 원고들의 각 지분에 상응하는 연 700,150원(= 연 1,400,300원 $\times$ 1/2)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결 론

그렇다면,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어재원

별지